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면서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2명(5급 2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1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00. ~ 12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방부령 제 호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6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국방부 내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

별표 1 중 총계 “675”를 “67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67”을 “669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208”을 “210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676”을 “678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68”을 “670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209”를 “211”로 한다.

별표 5의2 1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 ~ ⑮ (생략)	제4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 ~ ⑮ (현행과 같음)
⑯ 정보체계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⑯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9. 국방부 내 공공데이터 및 데 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국방부 공무원(군인제외) 정원표(제16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675</u>	<u>677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667</u>	<u>669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			
·공업사무관·임업사 무관·보건사무관·환 경사무관·항공사무관			
·시설사무관·방재안 전사무관·전산사무관			
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<u>208</u>	<u>210</u>	+2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1의2]

국방부 공무원(군인제외) 정원표(제16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76</u>	<u>678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668</u>	<u>670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			
• 공업사무관·임업사			
무관·보건사무관·환			
경사무관·항공사무관			
• 시설사무관·방재안			
전사무관·전산사무관			
• 방송통신사무관 또는			
기록연구관	<u>209</u>	<u>211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